

## 컬럼비아 특별구 공공도서관 Labs 공구 도서관 정책

컬럼비아 특별구 공공도서관 이사회는 1896 년 6 월 3 일 승인된 컬럼비아 특별구에 무료 공공도서관과 열람실 설립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, 다음에 개정된 대로(29 Stat. 244, ch. 315, § 5; D.C. 공식법규 § 39-105(2012 Supp.)); 1978 년 컬럼비아 특별구 정부종합유공자법(1979 년 3 월 3 일 발효) 제 3205(jjj)항(DC 법률 2-139; DC 공식법규 § 39-105(2012 Supp.)); 1985 년 컬럼비아 특별구 공공도서관 이사회 임명개정법(1985 년 9 월 5 일 발효) 제 2 항(DC 법률 6-17; DC 공식법규 § 39-105(2012 Supp.)); 1996 년 조달개혁개정법(1997 년 4 월 12 일 발효, 개정됨)(DC 법률 11-259; 44 DCR 1423(1997 년 3 월 14 일)); 1999 년 9 월 30 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농업, 농촌 개발, 식품의약청 및 관련 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책정법(1998 년 10 월 21 일 승인됨) 제 156 항(112 Stat. 2681, Pub. L. 105-277; D.C. 공식법규 § 39-105 (2012 Repl.)), 이로써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자치규정(District of Columbia Municipal Regulations, DCMR)의 제 19 편(오락,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) 제 8 장(공공도서관)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.

도서관 이사회는 DC 공식법규 §39-105(a)(10)(2012 Repl.)을 통해 규칙을 제정하고 도서관의 일상적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 관장을 임명했습니다. 규칙 제정안은 DC 공공도서관의 Labs 공구 도서관에 적용됩니다.

DCPL 관장은 2022 년 9 월 28 일 해당 규칙을 승인했으며 DC 등록부에 본 공지의 게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규칙을 최종 채택하기 위한 최종 규칙 제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

DCMR 제 19 편 오락,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의 제 8 장 공공도서관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 823 항을 추가하여 개정됩니다.

### 823 공구 도서관

- 823.1 DC 공공도서관은 DIY 자동차, 정원 및 주택 유지보수를 위한 공구를 갖춘 공구 도서관을 유지관리합니다.
- 823.2 유효한 도서관 카드 계정을 보유한 18 세 이상의 DC 공공도서관 대출 이용자들은 공구 도서관 참여자 사용/동의를 완료되면 Labs 공구 도서관에서 공구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. Labs 공구 도서관에서 공구를 대여하려면 유효한 정부 발급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823.3 한 번에 3 개 이하의 전동 공구를 포함하여 8 개 이하의 공구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.
- 823.4 Labs 공구 도서관에서 대여한 모든 공구는 DC 공공도서관의 자산입니다.

- 823.5 공구는 운영 시간 동안 Labs 에서 직접 대여 및 반납할 수 있습니다. Labs 직원이 대여 및 반납 시 공구를 검사합니다.
- 823.6 공구 대여 전에, 대여자는 Labs 참여자 사용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며, 이 양식은 서명일로부터 1 년 동안 유효합니다. 서명된 Labs 참여자 사용동의서는 전자적으로 보관됩니다.
- 823.7 공구 대여 기간은 7 일입니다. 대여자는 대여한 공구를 반납일 당일 또는 이전에 대여한 시점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이물질 없이 반납하는 데 동의합니다(일반적인 마모 및 손상 제외).
- 823.8 반복적으로 제때 공구를 반납하지 못하면 Labs 공구 도서관에서 대여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823.9 대여자는 분실된 공구의 교체 비용이나 대여한 공구의 손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.
- 823.10 반납일까지 공구를 반납하지 않거나 손상된 상태로 반납하는 경우, 대여자는 무동력 공구에 대해 \$15, 전동 공구에 대해 \$20 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. 공구 미반납 시, 대여자는 Labs 공구 도서관에서 대여 권한이 박탈됩니다. Labs 공구 도서관의 대여 권한은 수수료 납부 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. 수수료 지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823.11 대여자가 공구 대여를 연장하려는 경우, 공구에 예약(Hold) 대기자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. 대여자는 도서관 카드 계정으로 공구 대여를 연장하거나 Labs 에 직접 연락하거나 전화 202-727-1058 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최대 2 회 연속 연장이 가능합니다. DC 공공도서관 직원은 연장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823.12 공구를 즉시 대여할 수 없는 경우, 대여자는 DC 공공도서관의 온라인 카탈로그에서 또는 Labs 에 직접 연락하거나 전화 202-727-1058 을 통해 예약(Hold)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공구가 준비되면, 3 일 이내에 대여해야 합니다.
- 823.13 도서관은 위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가 허위인 경우, 공구 대여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.

규칙 제정안의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려면 DC 등록부에 본 공지 게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. 의견은 DCPL 법무 자문위원 J. Kevin McIntyre 에게 [General.Counsel@dc.gov](mailto:General.Counsel@dc.gov)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우편으로 Martin Luther King Jr. Memorial Library, 901 G Street, N.W., 4<sup>th</sup> Floor, Washington, D.C. 20001 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전화: (202) 727-1134. 규칙 제정안의 사본은 위에 명시된 주소로 서면으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.